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3. 6. 27.(화) 배포즉시 배포 2023. 6. 27.(화)

한일 수출규제 현안, 4년 만에 완전히 해소

- 일본, 6. 27.(화) 한국을 그룹 A(일명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정령 개정안 각의 의결 -

2019년 7월 이후 지속되어 온 한일 수출규제 현안이 4년 만에 완전히 해소되었다. 일본 정부는 6. 27.(화)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 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 속칭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6. 30.(금) 공포를 거쳐 7. 21.(금)부터 시행된다.

* https://www.meti.go.jp/press/2023/06/20230627006/20230627006.html

양국은 지난 3. 6일 수출규제 현안 관련 공동메시지 발표 이후, 제9차(3. 14.~16.)·10차 수출관리 정책 대화(4. 10.~25.)를 집중적으로 개최하여 일본 측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3. 23.) 등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 왔다.

* 우리 측 3개 품목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3. 23.), 우리 화이트리스트에 일본 재지정 고시 개정(4. 24.)

우리나라가 일본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 시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짐으로써 신청 자격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양국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일본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 재지정 기대 효과 >

이 전		이 후
□ 일반포괄허가 **불가** 특별일반포괄허가만 가능(CP기업) □ 캐치올통제 대상	⇨	□ **일반포괄허가 가능** (CP기업 아닌 일반기업도 포괄허가○) □ 캐치올통제 적용 X

* CP 기업 : 일정 수준 이상의 수출관리를 이행한다고 인정받아 자격을 얻은 기업
* 캐치올통제 : 수출통제 대상(전략물자)이 아닌 품목도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출허가를 받고 수출해야 하는 제도

산업부는 "지난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 간 신뢰 회복의 실마리를 마련한 이후 우리 측의 선제적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산업부-경산성 간 심도 있는 정책 대화 집중 개최로 수출통제 분야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양자 또는 다자 수출통제 현안 관련 일본과의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무역안보정책관 무역안보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영만 (044-203-4830)
		담당자	사무관	김미연 (044-203-405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붙임 **한-일 수출규제 현안 진행경과**

○ ‘19.7.1, 日 경산성은 **對韓 수출규제 강화조치 발표**후 **3개 품목 수출규제 실시**(7.4일) 및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8.28일)

○ ‘19.9.11, 한국, 일측의 **3개 품목 조치**를 **WTO에 제소**

○ ‘19.11 ~ ‘20.3월, **제7차** 및 **제8차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 개최**

○ ‘20.3 ~ ‘20.6월,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관련 **대외무역법 개정** 및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 조직 확대 개편** (1국 3과, 30명)

○ ‘20.6.2, 양측 이견으로 **WTO 분쟁해결절차 재개, 정책대화 중단**

○ ‘23.3.6, 한일 수출규제 현안 관련 양국 **공동메시지 발표**

* ①양국은 수출규제 현안 ‘19.7월 이전 원상복구 목표로 신속협의, ②일본은 수출관리 정책대화 재개 ③우리는 WTO 분쟁해결절차 잠정중단

○ ‘23.3.14~16, **제9차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 개최

○ ‘23.3.23, 日 **3개 품목 조치 해제** ⇌ 韓 **WTO 제소 철회**

○ ‘23.4.10~25, **제10차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 개최**

○ ‘23.4.24, 우리 화이트리스트(가 지역)에 **일본 지정**

○ ‘23.6.27, 日 화이트리스트(그룹 A)에 **한국 지정 결정**

* 6.30일 공포 → 7.21일 시행 예정

붙임 2 **(비공식번역) 일본 경산성 보도자료(6.27)**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이 각의 결정되었습니다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이하 외환법)에 근거한 수출무역관리령(이하 수출령) 별표 제3에 대한민국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출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이 오늘 각의 결정되었습니다.

1. 개요

□ 수출령 별표 제3에서 규정하는 국가에 대한민국을 추가합니다.

□ 수출령 개정에 따라, 포괄허가취급요령 등 관련 통달의 개정을 실시합니다.

□ 위와 같은 개정에 따라, 對한국 수출에 대해 일반포괄허가가 적용 가능해짐과 동시에, 캐치올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리스트 규제품목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대량파괴무기 또는 재래식무기의 개발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허가를 필요로 하는 제도

2. 구체적인 개정 내용

(1) 수출령 관련

□ 별표 제3에서 규정하는 국가에 대한민국을 추가

(2) 포괄허가취급요령 관련

□ 對한국 수출 및 기술제공에 대해 일반포괄허가가 적용 가능해집니다.

※ 관련 통달의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6월 30일 공포 예정인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 대한민국으로 수출 또는 기술제공을 하시는 경우, 계속해서 외환법 관련법령을 준수해 주시고, 수출관리내부규정 등에 근거하여 최종사용자 및 용도의 신중한 확인을 포함하는 엄정한 거래심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향후 예정 : 공포: 2023년 6월 30일(금) / 시행: 2023년 7월 21일(금)

(참고1) 퍼블릭코멘트 결과 https://www.e-gov.go.jp
(참고2) 관련 통달 개정 https://www.meti.go.jp/policy/anpo/law09.html
※ 6월 30일에 게시 예정입니다.